

異口
同聲 **나도 할 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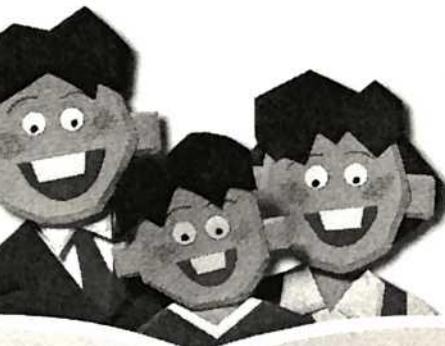
사제토론회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일시_ 2004년 11월 3일(수) 늦은 5시 40분
장소_ 대학로 씨네유 극장 2관
주최_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2650
02-2650
-7213

異口
同聲 나도 할 말 있다!!



사제토론회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일시_ 2004년 11월 3일(수) 늦은 5시 40분
장소_ 대학로 씨네유 극장 2관
주최_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화통이와 민용이와 두용이는 공부 잘한다고
게으름을 피우는 토끼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부 못하는 친구를 얹보는 토끼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친구를 따돌리고 몰래 혼자만 1등을 하는 거북
이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잠든 토끼를 깨워서 함께 가는 거북이가 되자.

그런 멋진 친구가 되자.

”

[제 75돌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참다운 학생 권리 회복의 물꼬를 트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실천위원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여러 단체에서 학생의 날 행사를 준비한다고 분주하다. 벌써 75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의 날 행사 내용은 바뀌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학생의 날 행사 주제는 어김없이 '학생의 권리 찾기'가 대부분이다.

학생의 날 행사 주제가 바뀌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이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심하게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학생의 권리 찾기는 학교 안에서 너무나도 면 일처럼 느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의 권리 찾기'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자.

학교나 사회는 아직도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고,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사리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단지 기성세대가 시키는대로만 하라고 강요한다.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이라 한다. 과연 그런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학생들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 들고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한다. 75년 전 11월 3일, 54년 전 4월 19일, 24년 전 5월 18일, 17년 전 6월 10일…… 진보의 역사 현장에서 학생들은 그 시작이 되거나 함께 참여하였다. 학생은 충분히 현실 문제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현장은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라는 엄청난 벽에 부딪혀 심신이 심하게 치치고 멍든 상태다. 자꾸만 자신들의 권리를 먼 곳의 이야기로 던지려고 한다. 자신들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몸으로 부딪치기엔 사회가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있다. 경쟁과 입시! 현재의 교육 현실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잠시의 여유 시간도 게임이나 즐기며 자족하라고 강요한다. 오직 성적만으로 줄을 세우고 평가하는 학교 사회에서 학생자치와 인권은 죽어지낸다.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옥쇄를 풀고 숨을 쉴 수 있는 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말초적이고 단세포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고민의 끈이 필요하다. 뭔가 큰 일이 벌어져야 한다.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마련한 사제토론회는 그 물꼬를 트고자 한다. 현재 우리가 처한 학생 권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참다운 권리 회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면 학생의 제반 권리는 생취할 수 있다. 우리가 논의할 학생 자치(학생회 법제화)와 인권 문제는 참다운 학생 권리의 회복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한 판 흐벅지게 놀아나 볼까!

사제 토론회 순서

시 간

사제 토론회 내용

17:40 ~ 18:50

- ▶ 개회 및 환영 인사
- ▶ 학생의 날 축사(유승준 전교조 서울지부장)
- ▶ 청소년 모의 법정 대본 공모전 시상 및 대상 작품 "인형공장" 공연

19:00 ~ 20:00

- ▶ 사제(師弟)토론회 :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 학생회 임원이 바라보는 학생회 법제화 (동대부고 학생회장 이은성)
 - 학생의 권리와 학생회 법제화의 의미 (전교조 본부 참설위원장 이을재)

20:00 ~ 20:30

- ▶ 학생 인권에 관한 방청객과의 자유토론
 - 학생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교칙, 생활규정, 두발자유, 종교자유, 체벌 등등)



학생회 법제화가 된다면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학생회장 2학년 이은성

안녕하십니까? 전 동대부고 총학생회 학생장인 이은성입니다. 저는 학생회 법제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법제화가 된다면 많은 것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학생회는 본분을 잃은 모임이라고 해도 전혀 거짓말이 아닌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1. 현재 학생회의 모습

여기서 저는 저희 학생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의 학생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학생회는 학생회 임원들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영위원 임원 학생들이 학생회를 '노동청년회'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조금은 창피도 하지만 우리 학교는 모두들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정말로 잡일만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학생대표 기구가 학교 행사 심부름꾼이나 잡일을 하는 모임이 된 것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기회는 주어지지도 않은 채 강당 청소, 운동장 청소, 축제 뒷정리, 자전거 관리, 그 밖에도 많은 잡일들을 합니다. 심지어 작년 축제 때에는 학교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학교 구석구석에 널려 있던 벽돌과 나무까지 날랐습니다. 다 좋습니다. 학생회는 봉사단체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일을 하고도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나? 개혁적인 것 좀 해라'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학교에서 언제 저희에게 개혁적인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기는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학생회 임원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활동보다 그렇게 학교 행사에 심부름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원들은 항상 말을 하죠,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학생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학교 행사에 형식적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 가장 어렵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요"

둘째, 학생회면 모든지 잘해야 한다는 선생님들의 편견이 있습니다. 학생회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다른 학생보다 조금 더 감싸주고, 일하느라 힘들지 않나고 격려하기보다는, 너희들은 다른 학생들 보다 더 잘해야 할 애들이 왜 그러냐면서 더욱 편장을 주시곤 합니다. 심지어 학생회는 복장도, 용의도 더 단정해야 하고 공부는 물론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죠.

셋째, 우리 학교 학생회는 회의를 저희끼리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 들어오시죠. 그리고 교감선생님 때론 교장선생님께서도 함께 참석하십니다. 저희는 물론 마음대로 발표할 수 없고 조금은 조심스럽고 어려운 마음에 회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의 안건 또한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정해준 안건으로만 진행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차지 활동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 또한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진행합니다. 회의를 하는 동안 모든 학생들의 발표가 적고, 참여도 또한 적습

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정하지도 않은 안건, 우리가 정말로 문제되고 있지도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당연히 참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중간에 건의사항들이 잘리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의견개진 뿐입니다. 그걸 받아주느냐 아니냐는 오로지 지도위원회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HR시간은 자습시간으로 변질되어 모두들 자습을 합니다. 학교에 주인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조금도 내놓을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는 학생회의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학생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학생회에 '예산 운영 권한'이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회에서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비를 털어 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를 조심스럽게 요청해 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꾸중과 편찬뿐입니다. 그리고 학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학생회가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책정할 때 학생회에게 의사를 묻는 일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용의복장 규정 등 학교 규정은 그 학교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만날 수 있는 모임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해 생활규정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며, 학생회조차 모르는 생활규정을 학생들 또한 전혀 알리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학교 학생은 생활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해를 보냅니다.

한국 학교 생활 규정

마지막으로 학생회실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회실은 거의 창고+골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실에 있고 4평쯤 간신히 될만한 창고 같은 방에 컴퓨터, 프린트는 물론 의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저런 물건들을 놓을 곳이 없으면 저희 학생회실에 넣어 놓는 식으로, 거의 창고나 다름없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학생회 임원 42명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답답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악취 또한 심합니다. 저희 학생회실을 바꾸어달라고 작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교실이 없다고만 하시고, 학생회실 주면 잘 하거나 할까라는 의심이나 하십니다. 만들어 주시지도 않아 보셨으면서, 그리고 저희가 학생회실에 모일 때 한번도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 봐주시지도 않으시면서 선생님들께서는 너무나 저희를 못미워하십니다.

선생님들도 저희를 그렇게 크게 인정해주시지 않는데, 일반 학생들이라고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학생들은 학생회가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학생회에 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냅니다. 이렇게 조금씩 학생을 대표해야 할 학생회의 권한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회 법제화가 된다면

2. 학생회의 권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대표적인 기구는 학생회입니다. 그런데 학생활동의 최종결정은 지도위원회 - 교장 또는 교감선생님 그리고 부장선생님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생활지도 및 선도 위원회', '규정 관리 위원회' 등이 있다 - 가하도록 되어 있죠. 예를 든다면 예·결산권, 학생회칙, 생활규정 제·개정권, 학생회사업 결정권 등 모두 학생회의 권한으로 있어야 할 것을 지도위원회가 갖고 있죠. 또한 대의원회의 안건도 학생회장 선거결과도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요. 아무리 쉽고 사소한 문제라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고 학생 모두가 원해도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학생이 지켜야 할 생활규정에 학생의 의견은 물론 없고 학생들의 공부도 자율학습, 보충수업도 강요로 받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학생회를 학생대표 자치기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은 학생회를 학생들의 대표기구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학생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결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학생회 법제화가 된다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지금의 학생회보다 더욱 권위 있고 인정받는 학생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행사의 심부름꾼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학생대표기구,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서 자율적 자치 활동이 보장되는 기구가 되어야 학생회의 예산은 학생회가 직접 결정하고 직접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 지켜야 할 학생 회칙이나 생활규정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지키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손으로 규칙을 정하고, 학생생활규정 결정에 참여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 규칙을 잘 지키고,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이나 책임 문제에 반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의 안건 또한 저희들이 정하며 모두들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회의의 참여도 또한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전의사항도 선생님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일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회의 모든 권한이 인정되며 학교의 모든 일을 학생의 대표들과 함께 추진하게 되며 학생들의 의사 또한 묻고 반영하는 그런 학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이 쉽지는 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재 학생회 활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몇몇 학생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 법제화 문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알려 나가야 하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권리와 학생회 법제화의 의미

1. 문제제기

한국이 1991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03년 1월에도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권고문을 낸 바 있다. 권고문의 내용은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부 지침, 학교 교칙을 개정할 것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할 것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에 언급된 교육의 목적(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이 반영되도록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청소년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들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극도로 제약되어 있으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 아래에서 자신의 뜻과는 달리 방篙도록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참기 어려운 긴장 속에 살고 있다.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는 자치기구로서의 제 모습을 가진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없다고 해도 될 만큼이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와 학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2.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인식과 학생 자신의 인식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그저 어리석은 존재가 아닐뿐더러,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유보할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다. 어리석으면 어리석은대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여기서 일정한 범위라는 것이 어리석음의 크기로 제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역시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누리는 만큼의 책임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비록 어리지만 성인 못지않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적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많은 경우 이런 마땅한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학생들의 혁명함은 4·19, 3·1운동 등 역사적 사실 속에서 그리고, 가까이는 80년대 후반 학생들의 두발, 복장 자유화 운동 혹은 비민주적이고 형식적인 학생회를 자주적인 직선제 학생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 나아가 학교의 부패와 비리 척결 운동 등을 통해 확인되어왔다.

3. 모든 학생들의 개인적·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어가는 것이 모든 학생들의 권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채, 일부 선진적 학생들만의 고립된 외로운 외침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80년대 말에 학생들은 자주적 직선제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의 자유를 요구하는 학교 단위의 대중적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들은 흥사단이나 카톨릭 등 종교·사회단체 내의 고등학생 모임 등을 거쳐 마침내 이를 자주적 전국고등학생 조직으로까지 발전시켰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 역시

학생의 권리와 학생회 법제화의 의미

전교조 본부 참실위원장 이을재

자주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결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전교조의 위축과 정치·사회적 이완 속에 학생들의 이러한 소중한 경험이 학생들의 보편적 권리로 정착·발전되지 못한 채, 청소년단체 회망, 전국중고생연합 등의 형태로 조직적 운동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학생들의 표현·결사의 자유의 실현은 학생들 자신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80년대 말 학생들의 자주적 모임과 활동은 교사들에게 자극제가 되기도 하였다. 소수 선진 학생들의 모색을 넘어 모든 학생들의 보편적 자유 실천에 대한 모색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때이다.

4.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인권침해 상황을 극복하려 할 때,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꿀 자격이 있는 한 인간이며, 또 그럴만한 능력도 갖추고 있음에도, 소중한 인생의 한 부분인 청소년 시기에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라는 구실로, 학생들이 인권과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들은 보살피고 깨우쳐져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학생들은 성인들과 동등한 인격과 소중한 의견을 가진 인격체이다. 잘못된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일반적 인간관계의 원칙대로 학생들 역시 스스로 겸허하게 자신의 의견을 객관화시켜 집단적 토론과 대화 속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 침해 상황은 단순히 성인과 청소년의 가치 충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 회복은 성인들의 시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의 요구와 노력이 결합될 때 가능하다. 학생들이 입시제도 및 상업적 대중문화 등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삶과 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때라야만, 학생들의 인권 침해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5. 학생회 법제화는 학생 권리 회복의 한 방편이다.

굳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은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먼 것이 학생회의 현실이다.

학생회 법제화는 학생회의 권한과 책임, 활동을 법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회에 대한 현행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에 있다. 하지만 규정의 애매함과 학교의 권위주의적 구조, 입시교육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의 심화로 인해 학생자치활동은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학생회의 권한과 책임, 활동을 법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학생회로 대표되는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자율적인 학습과정이며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신의 인권과 권리는 물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며, 다양한 토론문화 속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등 그들의 자치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최소한 헌법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1989년 채택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수준의(학생의 권리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출판 및 표현의 자유, 학교 운영 참가의 권리, 학생관련 규정에 대한 의결의 권리) 학생권리를 학생회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학생회 법제화의 의미

첫째, 학교가 민주주의 교육 실천의 장이 될 것이다.

교육은 수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참여와 실천을 통해 그 구체성과 현실성을 띠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교는 지식전수의 수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목적의식적인 현실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화석화된 문구와 지식으로 체득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학생들에게 권리를 나누어주고 그 책임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학교의 민주주의 교육은 살아 숨 쉬게 될 것이다.

둘째, 학생 생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행 생활규정은 대부분 교육주체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규칙이다. 그러므로 교육주체들은 생활규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모든 규칙은 구성원의 대표 또는 일정기준을 갖춘 구성원들에 의해 발의되며 구성원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학교의 생활규정은 그렇지 못하며 결국 준수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생생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힘에 의해 관리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학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게 될 때, 합리적인 생활교육의 가능성 이 확대될 것이다.

셋째, 학생 인권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학생 인권 문제는 여러 번 문제가 된 바 있지만, 아직도 군사문화와 입시구조에 눌려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생회를 통해 온전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는, 곧 학생 인권의 개선과 직결될 것이다.

넷째,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 문화의 주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학생회·동아리의 연대활동과 사회활동을 생활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 동아리 연대활동 등을 통해 지역문화를 함께 고민하며 실천해 나가고, 학생회들의 모임을 통해 서로를 배우고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학교는 학생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곧 지식은 살아 숨 쉬게 될 것이며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화 창조자가 될 것이다.

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현행 법규정

개정(안)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7조(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
 ① 학교에는 학생들 전체로 구성되는 학생회를 둔다.
 ② 제1항의 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학생회 이외에 학년별, 학급별 학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구성되는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에 대해 성적, 연령,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칙 중 학생회와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제정과 개정 발의
 2.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3. 학생회 예·결산권
 4. 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
 5.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선출
 6. 기타 학칙에 의해 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⑤ 학생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⑥ 학생회에는 학생들에 의해 선출되는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을 둔다. 다만, 학생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학생위원이 된다.
 ⑦ 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⑧ 이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학생회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의 의결로 정한다.
 ⑨ 학생회 이외의 학생자치활동도 권장·보호되며, 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⑩ 학생회 법령과 학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학생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체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나. 개정취지

학생회는 교직원회, 학부모회와 함께 공식적인 학교기구로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학칙제정, 학생복지, 학교운영 등에 관하여 폭넓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91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아동권리협약과 헌법의 기본권 보호 원칙에 비추어 학생의 기본적 권리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생회 심의·의결단위는 학생총회를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심의의결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회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회장을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학생위원으로 참석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법제화하라!!'

-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명시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중고등학교 학생회 법제화는 제외했다.
- 현재 중고등학교의 학생회 활동은 학예활동의 일환으로만 취급돼 모든 활동이 지도위원회 및 학교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학생회 예산의 예결산권, 학생회칙이나 생활규정의 재 개정권, 학생회 사업 결정권 모두 지도위원회가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학생회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대의원회의 안건도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학생회장 선거결과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특히 학생회칙, 학생생활규정 재 개정권을 학생회에 주지 않음으로 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됨으로 해서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규율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학교의 강압과 통제로만 느끼고 있다.
- 학생자신의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학생에게 주고 책임지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이며 이는 학생자치권을 학생들에게 보장해 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학생들의 대표기구, 자치기구로 인정되어야 한다.
- 이번 열린우리당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중고등학교의 법제화를 제외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아직도 보호와 감독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의 반영으로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과 힘을 무시하는 것이다.
- 이에 우리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운동본부(준)'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학생회 법제화가 명시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10. 21(목)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운동본부(준)



학생회 활동관련 국정감사자료 요청내용(2004년)

*자료제공 : 민주노동당의 청소년위원회(준)

학생회의 권한

1. 학생회장(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지 여부
2. 학생회에 예산운영관한 범위
전체 학생회비 예산은 얼마인가?
축제예산은 얼마인가?
학생회에서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청구하는 경로와 절차는 어떠한가?
학교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는가?
예산을 책정할 때 학생회(학생, 동아리)의 의사를 묻거나 의논하는가?
예산 심의 및 예산확정 시기는 언제인지? (몇 월에 논의를 시작해서 몇 월에 거의 확정 되는가?)
3. 용의복장 규정 등 학교 규정은 그 학교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제정하도록 돼있는데 학생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여 규정을 정하고 있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각종 소위원회를 꾸려 학교 규정을 새롭게 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 해년도의 생활규정을 정하는지?

학생회자치 활동 현황

1. 학생회실 존재 여부 / 사용의 자율성 정도 / 1학기 사용 횟수 / 어떤 기기들을 갖추고 있는지 (컴퓨터, 프린터, 인터넷 연결, 복사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2. 학생회 임원 종류 및 인원 / 1학기 임원회의(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회수 / 1학기 운영위원회 주 안건 / 운영위원회에 학생회 담당교사 참가여부
3. 학급회의는 학칙(규정)대로 개최하고 있는지? 학급회의 경우 대체수업(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을 하고 있는지 아님 회의를 진행하는지 여부
4. 대의원회의 개최는 학칙대로 개최하고 있는지? 1학기동안 개최된 횟수 및 주 안건 및 결정내용(회의록 첨부) / 참가교사범위 및 인원
5. 대의원회의나, 학급회의를 통해 올라온 각종 건의사항 (용의복장 규정, 급식문제, 학교시설개선 등)은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접수, 처리, 반영되는가? 예를 들자면 교무회의 때 보고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또한, 처리결과를 공개하는가? 학생들에게 통보를 하는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학생회 선출 방법

1. 학생회장 및 운영위원 자격제한(성적, 종교, 기타)이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2. 학생회 선거 시기
3. 학생회 선출 방법(직선, 간선)
4. 학생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 선출 방법은?
5. 학생회 부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회칙 및 학칙

6. 학생회장 당선자(혹은 그 부모님)께서 물품(상품권, 떡, 에어컨 등)이나 금품을 학교에 기부하거나 사례한 적이 있나? 관계적으로 어떻게 해오고 있는가?

1. 회칙 및 학칙 학생에게 공개 여부 및 방식
2. 회칙, 학칙에 대한 학생 견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3. 최종 마지막으로 개정한 것은 언제인가?
4. 회칙, 학칙에 대한 개정은 주로 어느 시기에 논의하여 처리하는지?
(예) 2학기 말인지, 1학기 초인지 여부
5. 학교 규정 및 회칙 첨부

●자료 요청 범위 및 대상학교

〈서울〉

중학교 - 신림중, 신관중, 광신중, 구일중, 구로중, 신도봉중, 경인중, 오남중, 대명중, 오륜중, 영남중, 강신중, 목일중, 봉원중, 서문여중, 세화여중, 은광여중, 휘문중, 구정중, 대치중, 개웅중, 신도림중, 우신중, 양강중, 삼정중, 장원중, 중앙중, 경신중, 배재중, 가락중, 세륜중

인문여고(20) - 양천여고, 동일여고, 명성여고, 정신여고, 정의여고, 상명여고, 대진여고, 송곡여고, 중앙여고, 계성여고, 한성여고, 풍문여고, 동명여고, 영파여고, 이화여고, 진명여고, 덕원여고, 경복여고, 경희여고, 금육여고

인문남고(20) - 숭문고, 환일고, 경복고, 경신고, 동성고, 대원고, 성동고, 송곡고, 대진고, 중앙고, 경기고, 경동고, 대광고, 양정고, 용문고, 자양고, 중화고, 청량고, 화곡고, 우신고

인문공학(11) - 구로고, 인현고, 누원고, 당곡고, 금천고, 개포고, 연남고, 건대부고, 노원고, 삼성고, 성보고

실업고(15) - 도봉정산고, 성동여실고, 경복여상, 한양공고, 성동기공, 북공고, 동일여상, 영광여정산, 경기기공, 덕수상고, 선린인터넷고, 고명정산고, 용산공고, 성수공고, 영상고

특수목적고(6) - 서울외고, 이화외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한영외고, 명덕외고

사제토론회 학생기획단 활동후기

대한민국의 중학생으로서 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입시제도 아래 중학생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방과 후 밥도 먹지도 못 한 채 지친 몸을 이끌고 바로 학원을 가야하는 우리가 제대로 된 회의를 하기는 커녕 모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회 법제화가 시행이 된다면 무엇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학생회 활동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학생회 법제화란 이름으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꼴이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입시제도와 학생회 법제화 한 번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무엇이 더 먼저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로 받아 들여져야 합니다.

영서중학교 학생회 3학년 오석희

이번에 사제토론회 학생기획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몰랐던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회는 다른 학교에 비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편이라 처음에는 학생회 법제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는데,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적극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회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학생회는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도 할 수 없고, 학교에 학생들의 의견을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생회 법제화가 되면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에 말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학교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아직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고 학생회의 활동이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곡고등학교 부학생회장 1학년 정주영

사제토론회 준비기획단에 속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회 임원직을 맡고 있는 것과 달리 나는 우리학교 학생회와 별다른 연관이 없다. 아니,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다. 친구들 사이에서 학생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인니까. 나는 별다른 활동없이 말만 많고 '무능한 학생회 탓'을 외치는, 우리 학교 학생회의 안티이다. 후보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 된 학생회 임원들도, 봉사활동 80시간을 준다는 말에 혹해 평의원에 지원한 아이들도,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빽으로 들어갔다'는 수군거림을 듣는 학생회 평의원들도, 축제준비로 모였을 때 써를 부장들의 항의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다는 학생회장도, 그리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매일 남는 학생회도 내겐 모두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해 보였다.

하지만 이번 사제토론회 준비에 참여하고 보니, 정작 바보 같았던 것은 내가 아니었다. 싶은 생각이 듈다. 나는 우리나라의 학생자치가 뼈저거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모른 채 그 걸 깨질만 보고 유태웠던 것이다. 학생회 법제화는 현재의 허울뿐인 학생자치제도가 좀 더 진정한 의미의 학생 자치에 가까워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학생회 법제화 만으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학생자치가 100% 만족스럽게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회 법제화가 억눌려 있던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이번 행사가 나처럼 학생자치에 대해 무지하며 방관만 했던 학생들이 좀 더 우리들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여본다.

중화고등학교 1학년 김수경

학생회 법제화라는 자체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과 관련된 일들을 학생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학생회 법제화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학생회 법제화가 보장된다 한들 학생들이 법제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사제토론회 학생기획단을 같이 하면서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꼭 보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제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서중학교 부학생회장 3학년 한선미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나는 학생회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이번 사제토론회 준비 학생기획단에서 활동함으로써 처음 알았다. 또한 이 사회에서 많은 쟁점으로 되어왔고 교내 학급회의나 대의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되어진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너무 생활화되어 있어서 특별히 인권침해라고 느껴 불만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기획단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교육방식과 말로만 학생자치활동이라 불리는 학생회가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학생 인권이 학교에서의 체벌이나 교칙 등을 볼 때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해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우리 학생기획단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토론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우리의 권리가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성보고등학교 학생회 1학년 허균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사제토론회 학생기획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면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모로던 사실을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제토론회 준비하면서 현재 학생회 운영이 정말 열악한 환경으로써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도적으로 학생회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 예로는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 운영에 대해서 학생들이 주가 되지 못하고 선생님들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처럼 학생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 선생님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진정한 학생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회 법제화를 통해 학생회가 선생님들의 도우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잘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학교 교칙에 따라 학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두발문제입니다. 사람은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학교교칙이라는 명분만으로 타인에게 머리를 잘린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너무 억울한 처사입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머리가 좀 길면 학생답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답다"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명확한 기준 없이 단지 머리가 길면 학생답지 못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짧고 단정해야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고 머리가 긴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고 노는 아이들이라는 편견은 이제 버릴 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인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곡고등학교 부학생회장 1학년 심규범

메모하세요

75돌 학생의 날 기념행사

異口同聲 나도 할 말 있다

<http://moim.ktu.or.kr/Seoul>

사개토론회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 일시 : 2004년 11월 3일 늦은 5시 40분
 - 장소 : 대학로 짜네유 2관
 - 주최 : 저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시간	사제 토론회 내용
17:30 ~ 1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회 및 환영 인사 ▶ 학생의 날 축사 (유승준 전교조 서울 지부장) ▶ 청소년 모의 법정 대본 공모전 시상 및 대상작품 “인형공장” 공연
19:00 ~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제(師弟)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임원이 바라보는 학생회 법제학 (동대부고 학생회장 이은성) - 학생의 권리와 학생회 법제학의 의미 (전교조 본부 참설위원장 이을재)"
20:00 ~ 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인권에 관한 방청객과의 자유토론 “학생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교칙, 생활규정, 체벌, 두발자유, 종교자유 등등)”